

[변경대비표]

1. 펀드명

타임폴리오 TIMEFOLIO 글로벌안티에이징바이오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)

2. 작성기준일 : 2025.04.28

3. 정정사유 :

- 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의거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
-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 관련 규정사항 보완
- 소득세법 제57조의2 및 법인세법 제57조의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
- 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34조 제2항 반영 보완
- 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

4. 효력발생일 : 2025.06.12

<신탁계약서>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 17 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 관련 규정사항 보완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----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이 투자신탁 ----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<추가>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	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---- 그러하지 아니하다. 2. 이 투자신탁 ----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
제 21 조(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)	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 제 2 항 반영 보완	①신탁업자는 ---요구해야 한다. <추가>	①신탁업자는 --요구해야 한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<일괄신고서>

항 목	정정 요구·명령 관련 여부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		
투자비용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			
운용전문인력				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5. 운용전문인력에 관 한 사항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		자본시장법 제 81 조제 1 항 관련 규정사항 보완	②동일종목투자제한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<추가>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	②동일종목투자제한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(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.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	문구 정비	(2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 년 이 경과한 경우) 2) “97.5% VaR”는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 <추가>	(2) 수익률 변동성 기준 (설정 후 3 년 이 경과한 경우) 2) “97.5% VaR”는 과거 3 년 일간 수익률에서 2.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 ($\sqrt{250}$)를 곱해 산출하며, VaR(Value at Risk)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 수단입니다. 상기 표상 VaR 값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(신뢰 구간 97.5%)을 의미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14.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·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		소득세법 제 57 조의 2 및 법인세법 제 57 조의 2 개정사항 반영(2025.01.01 시행)	<추가> 다만,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 환급세액 =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* *환급비율 : (과세대상소득금액/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) 단, 환급비율>1 이면 1, 환급비율 <0 이면 0 으로 함	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,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 등)가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(2025 년 1 월 1 일 이후부터 적용) <삭제>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재무정보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2.연도별 설정 및 매매 현황				
3.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	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개요	아니오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 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	기준일자에 따른 업데이트	-	업데이트
2.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) 집합투자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 주요업무		신탁업자 가이드라인 제 34 조 제 2 항 반영 보완	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--요구하여야 합니다. <추가>	(2)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② 집합투자재산--요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신탁업자가 정보를 지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채권평가회사 주소지 변경	회사명: 한국자산평가㈜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삼한빌딩 4 층	회사명: 한국자산평가㈜ 주소 및 연락처: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본관 11 층

2)채권평가회사
가. 회사의 개요